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의료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업

무상과실치사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5. 2013고단1076, 2013고단1269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윤병준(기소), 윤병준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신현호 외 16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다만,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9,100,000원, 피고인 2로부터 11,960,000원, 피고인 3으로부터 5,500,000원, 피고인 4로부터 4,050,000원, 피고인 5로부터 3,700,000원을 각 추징한다.

위 벌금 상당액 및 각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